

1997. 3.

## 조례안심사보고서

총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총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 조례안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97. 3. 10	'97. 3. 11	제22회(임시회) 제1차충무위원회 ('97.3.19)	'97. 3. 19	충무과장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	"	"	세정과장

## 2. 제안설명요지

### 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안설명

-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함.
- 병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
-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안설명

-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현행조례증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함.
-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함.
-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용 감면지역 범위를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단지내로 제한하고 감면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으로 함.
-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
- 기존 재래시장에서 5년이상 입점한 상인이 시장재개발 사업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 주민 편익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의 사기 양양책으로도 볼수 있으나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기기관에서도 중단을 검토한 바 있으므로 실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지참, 조제 및 의출의 경우 누계 8시간을 하였을 때 년가 1일로 계산하는 것은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이며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준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조례는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하기 위하여 국가 공무원복무규정과 충북도에서 '97. 1월에 시달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 조례안에 의하여 개정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림.

#### 나.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등 조례 제11조 제2항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면제 규정신설은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혜택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설된 제18조의 2의 재래시장 재개발, 제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할에 있음.
- 지방세법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내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본조례안은 1997. 1월 충북도에서 통보된 개정안에 의해 개정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림.

#### 4. 질의 답변요지

- 없음

## 5. 심사결과

-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6. 붙임

-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조례 제 호

##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근속 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중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중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

제23조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를 “부속 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 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을”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 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중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2. 시장 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